

심 사 보 고 서

1.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안	1
-----------------------------	---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7
----------	-----

2016. 9. 9.(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윤홍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6년 08월 19일

다. 회부일자: 2016년 08월 22일

라. 상정일자: 2016년 09월 06일

(제350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윤홍창 의원)

가. 제안이유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함
(안 제3조)
- 2) 인성교육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3) 인성교육 운영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 4) 학교의 장은 매년 인성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 5)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6) 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7)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명시함(안 제9조)
- 8).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 함(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가.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인성교육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효성 있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은 현대와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역량 임. 따라서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인성교육 정책마련과 체계적 실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과 지원 사항을 담은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와 제5조에 매년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성교육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 교육장이 인성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 추진실적을 교육감에게 제출 하도록 한 사항은 학교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교육적 효과를 강화하고, 인성교육 중요성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 인성교육진흥협회의 설치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한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인성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체계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협의회가 심의의결기구로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객관성,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라. 또한, 연구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제10조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충북의 인성교육 발전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상호유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을 강조한 안 제11조는 인성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인성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확립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 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품성을 함양하여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성품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목표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인성교육 관련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6. 인성교육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가정·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인성교육의 평가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성교육 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 평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의 인성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인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추진 실적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설치)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
-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 연수) 교육감은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인성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 인성교육의 홍보
3.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 인성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 급별로 정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은 학교의 장이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제12조(인성교육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주기적인 수요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는 시설이나 자료에 대하여 인성교육을 위한 이용 요청을 받은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도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